

公正去來制度와 企業

Fair Trade System and Business Growth

鄭 智 澤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公正去來總括課

1. 序

81年 4月부터 公正去來法이 施行되고 있다.

이 法은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機會均等を 바탕으로 經濟各部門의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企業의 國際競爭力과 經濟體質을 強化하고, 나아가 우리 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制度이다.

經濟開發의 初期段階인 60年代에 있어서 우리 經濟는 그 規模面에서 國內市場은 狹小하였고 民間企業은 資本이 不足하고 技術水準과 經營能力도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民間企業에 대한 政府의 保護와 支援이 不可避하였으며, 保護와 支援에 의한 開發戰略이 高度의 經濟成長을 가져오는데 큰 寄與를 하였다는 事實을 否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保護·支援에 의한 經濟運用方式은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民間企業이 伸張되면서 漸次 그 不作用을 드러내기 始作 하였다. 即 主要工產品의 供給에 있어서 上位 3社의 市場占有率이 50%가 넘는 獨寡占型이 90%에 肉薄하여 市場構造가 獨寡占化되고, 獨寡點大企業들은 價格·品質爲主의 競爭보다는 安易한 經營과 無分別한 擴張으로 企業의 體質만 弱화되었으며, 競爭을 制限하는 談合行爲와 不公正한 行爲가 價行化되어 市場秩序도 紊亂하여 졌다.

이에 따라 從來의 經濟運用方式은 새로운 方向으로의 轉換이 必要하게 되었고, 이와같은 要求에 副應하여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機會均等を 바탕으로

經濟各部門의 公正한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保護·支援政策이 가져온 弊害를 是正하고 새로운 經濟秩序를 形成코자 導入된 制度의 하나가 바로 公正去來制度라고 하겠다.

2. 公正去來制度의 主要內容

公正去來法은 市場構造面에서 獨寡占을 規制하고 去來行態面에서는 競爭을 制限하거나 不公正한 行爲를 바로잡는 것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다.

이미 獨占의 地位에 있는 市場支配의 事業者는 濫用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規制하고, 새로운 獨寡占 企業이 나타나지 못하게 競爭을 制限하는 企業結合을 制限하고 있다.

또한 去來行態面에서는 獨寡占과 같은 弊害를 가져오는 不當한 共同行爲를 制限하고, 協會·組合等 事業者團體의 不當한 行爲를 禁止하고 있으며, 日當의 去來活動에 있어서 商去來秩序를 어지럽히는 不公正한 行爲를 規制하고 있다.

가.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濫用行爲 禁止

市場支配의 事業者란 商品의 價格과 供給量을 어느 程度 自己의 意思대로 左右할 수 있는 大企業으로서, 最近 1年間의 國內總供給額이 300億원以上인 品日을 生産·供給하는 事業者중에서 1社의 市場占有率이 50%以上이거나 3社以下의 占有率의 合計가 70%以上인 경우에 해당하는 事業者가 市場支配의 事業者로 指定된다.

83年現在는 58個品目에 107個事業者가 指定되어 있다.

이와같은 市場支配的 事業者는 價格을 不當하게 決定하거나, 商品 또는 用役의 出庫를 不當하게 調節하는 行爲 및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妨害하는 등 獨占의 地位를 利用한 濫用行爲가 禁止된다.

나. 企業結合의 制限

企業結合은 株式取得, 任員兼任, 合併, 營業의 讓受 및 會社의 新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公正 去來法은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企業結合을 이를 禁止하고, 例外的으로 産業合理化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 이를 認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企業結合이 制限되는 對象은 納入資本金이 10億 원以上이거나 總資產이 50億 원以上인 會社가 되며, 會社以外的 個人이나 非營利法人등도 株式取得의 경우에는 制限의 對象이 된다.

또한 公正去來法은 競爭을 制限하는 企業結合을 監視할 수 있는 手段으로서 企業結合制限對象 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10%以上을 取得·所有하거나 合併·營業의 讓受·會社의 新設을 하는 경우와 會社以外的 個人이나 非營利法人등이 競爭關係에 있는 둘 以上の 會社의 株式를 各各 10% 以上 取得·所有한 경우 이를 申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다.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共同行爲란 소위 “카르텔”로서 事業者가 契約·協定등 어떠한 方法으로든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價格을 똑같이 決定하거나, 販賣條件을 制限하고 生産·出庫를 制限하는 行爲 또는 去來地域이나 去來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를 말한다.

이러한 共同行爲는 모두 經濟企劃院에 登錄하여야 하며 登錄하지 않은 共同行爲는 無效가 된다.

公正去來法은 登錄申請한 共同行爲의 內容이 一般消費者나 去來相對方등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共同行爲로서 登錄을 拒否하거나 그 內容을 變更하여 登錄하도록 하고, 例外的으로 不況克服이나 産業合理化를 위한 경우등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認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라. 協會·組合등 事業者團體의 不當한

行爲 禁止

事業者團體라 함은 그 名稱과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2 以上の 事業者가 共同의 利益을 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로서 協會·組合·聯合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事業者團體는 上記 共同行爲의 경우와 같이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行爲라든가, 競爭事業者의 數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事業者數를 制限하는 行爲, 會員社나 組合員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하거나 不公正한 去來行爲를 強要하는 行爲등 不當한 行爲는 禁止되며, 이를 監視하기 위하여 公正去來法은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設立申告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마. 不公正한 去來行爲의 禁止

日常的인 去來活動에 있어서 公正한 競爭秩序를 阻害하는 不公正한 去來行爲는 禁止된다.

事業者들의 去來行爲는 그 形態가 매우 多樣하고 慣行도 수시로 變化하기 때문에 모든 不公正한 行爲를 일일이 法으로 規定하기는 어려우므로 公正去來法은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을 經濟企劃院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現在 모든 去來分野에 共通的으로 適用되는 一般的인 不公正去來行爲로서 不當한 去來拒絶, 去來強要, 價格差別, 不當表示 및 虛偽誇張廣告, 優越的인 地位의 濫用行爲등 12個類型이 告示되어 있고, 特定한 行爲에만 適用되는 不公正去來行爲로서 商品類提供과 下郡給去來上의 不公正去來行爲가 別途로 指定되어 있다.

또한 公正去來法은 特殊한 不公正去來行爲로서 生産者가 流通段階別로 都賣·小賣價格을 미리 정하고 그 價格대로 받도록 強要하는 再販賣 價格維持行爲도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바.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競爭을 制限하거나 不公正한 內容이 포함된 國際契約은 그 締結이 制限된다.

國際契約은 外資導入法에 의한 借款·合作投資·技術導入契約과 輸入代理店契約·長期輸入契約으로서 이와 같은 國際契約에는 外國事業者가 國內

事業者에 대하여 原材料나 商品供給者를 一方的으로 指定한다거나, 販賣地域·販賣條件 또는 輸出地域 등을 制限하고 競争商品의 取扱까지 制限하는 不公平한 内容이 許多하여 公正去來法은 國內事業者의 對外交渉力을 補強하기 위하여 不平等한 國際契約은 이를 締結하지 못하도록 制限하고 國內競争秩序에 미치는 영향이 輕微하거나 不得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例外的으로 認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사. 公正去來法 運營機構

公正去來法은 그 專擔機構로서 經濟企劃院에 必須的 審議機構인 公正去來委員會를 두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現在 次官級을 委員長으로 하여 2人的 常任委員과 2人的 非常任委員을 포함, 5人的 委員으로 構成된 公正去來委員會가 設置되어 公正去來制度에 관한 重要한 事項과 法違反事項을 審議·議決하고 있으며, 6個課로 構成된 公正去來室이 委員會의 行政機能을 아울러 遂行하고 있다.

3. 2年間の 主要推進實績

가. 概觀

政府는 지난 2年余間 施行初期에 있는 이 制度를 하루빨리 우리 經濟에 定着시키기 위하여 運用基盤을 整備하면서 國民 各界各層의 理解와 受容態勢를 確立 하는데 重點을 두어 시책을 推進하여 왔다.

첫째, 既存의 獨寡點企業이 市場을 支配하는 힘을 濫用하지 못하도록 市場支配의 事業者를 指定하여 그 弊害를 監視하고, 大企業이 競争會社의 株式를 取得하거나 經營을 支配함으로써 새로운 獨寡點企業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防止하는데 注力하였다.

둘째, 協會·組合 등의 事業者團體나 그 會員社들이 價格을 똑같이 받자고 談合을 하거나, 價格下落을 막기 위하여 生産量을 制限하기로 決議하는 등의 不當한 行爲는 嚴格是正하도록 措置하였고, 「시멘트」共同販賣制는 今年 6월부터 이를 廢止하여 시멘트産業을 自律競争體制로 轉換하도록 하였다.

셋째, 企業이나 消費者가 서로 믿고 去來하는 公正한 去來秩序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變則割引販賣와 過多한 景品類 提供行爲를 是正하고, 去來의 基本이 되는 表示·廣告의 公正去來指針을 마련하였으며, 大企業과 中小下都給事業者間的 公正한 下都給去來의 基準을 設定하였다.

넷째, 制度運用에 대한 共感帶를 擴散시켜 나가기 위하여 事例中心의 教育·弘報活動을 展開하여 왔으며, 企業과 消費者의 隘路事項 및 疑問事項에 대한 事前相談機能을 活性化하고자 公正去來室에 常設相談室을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以上の 實績中에서 특히 公正한 表示·廣告의 指針과 下都給去來의 基準은 政府가 今年度부터 本格推進하고 있는 重點施策이므로 그 內容을 좀더 詳細히 紹介하기로 한다.

나. 公正한 表示·廣告의 指針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去來內容에 관한 公正한 表示·廣告야말로 事業者間的 健全한 競争風土를 造成하고, 消費者에 대하여는 商品이나 用役에 대한 正確한 情報를 提供함으로써 올바른 商品의 選擇과 合理的인 消費生活를 뒷받침해주는 基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2年末 마련된 公正한 表示·廣告의 指針은 商品이나 用役의 品質·規格·性能·容量·原產地·製造日字·有效期間 기타의 去來內容과 商品의 價格·供給數量·引導條件·代金支拂方法·保證·「아프터서비스」기타의 去來條件에 관하여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거나, 消費者를 속이든가 속계꿈 誤導시키는 表示行爲를 한다거나, 競争事業者의 商品에 관하여 事實과 다르게 또는 誇張하거나 中傷·誹謗하는 內容의 表示·廣告行爲를 不當한 表示·廣告로서 規制對象으로 정하고 있다.

다. 公正한 下都給去來의 基準

下都給去來에 있어서 原事業者는 自己의 優越한 地位를 利用하여 下都給事業者에게 下都給代金を 터무니없이 낮게 정하거나, 約束한 期日까지 代金を 支拂하지 않거나, 當初에 決定한 下都給代金を 터무니없이 깎는 등 公正하지 못한 行爲를 하는 경우가 許多하다.

이와같이 原事業者가 下都給事業者의 利益을 不

當하게 侵害하게 되면 中小企業인 下都給事業者의 健全한 育成과 發展을 期待하기 어려우며, 結果的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均衡있는 發展을 阻害하여 國民經濟에 좋지않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政府는 原事業者와 下都給事業者間의 相互協調를 바탕으로 한 共存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公正한 下都給去來의 基準을 정하여 運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는 原事業者와 下都給事業者間의 相互協調를 바탕으로 한 共存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公正한 下都給去來의 基準을 정하여 運用하고 있다.

이 基準은 原事業者가 下都給事業자에 對하여 製造委託·修理委託·建設委託을 함에 있어서 不當한 下都給代金の 決定, 先給金不支給, 不當한 受領拒否 및 不當返品, 代金支給遲延, 不當減額등을 禁止하고, 原事業者가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 下都給事業자에게 書面을 交付하도록 義務化 하는 것등을 그 主要骨子로 하고 있다.

라. 違反事例 是正實績

公正去來法이 施行된 以後 違反行爲로서 是正權告 및 是正命令을 받았거나 告發된 事例는 모두 71件에 達하는데 主要違反事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虛偽誇張廣告行爲

國內 兩大 冷蔵庫製造會社들이 自社製品에 대한 虛偽誇張廣告로 인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事例이다.

即 S社는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의 冷蔵庫를 誹謗하면서 自社製品의 規格을 事實과 다르게 廣告하였고, G社는 自社冷蔵庫의 冷蔵庫크기를 實際보다 誇張하여 廣告하였는바, 公正去來委員會는 兩社에 대하여 違反行爲를 消費者에게 謝過하는 內容의 廣告를 新聞에 掲載하도록 命令하였다.

또 TV保眼器製造會社인 J社는 自社製品에 美國「UL」로부터 規格承認을 받은 것처럼 虛偽表示하고 宣傳팜프렛을 통하여 이를 廣告한 事實이 있어 「UL」마크表示行爲를 하지 말고 이와같은 虛偽廣告行爲도 하지 않도록 是正命令을 받았다.

(2)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不當한 拘束去來行爲
食品會社인 J社가 代理店 D와 맺은 契約內容中

D의 販賣地域을 制限하고, 販賣段階別 價格을 指定하여 이를 지키도록 強制하며, 營業場所를 移轉하거나 商號를 變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J의 承認을 받도록 하는 등 不當하게 D의 事業活動을 拘束하는 條項이 包含되어 있어 契約內容中 不公正한 行爲에 해당하는 條項은 이를 削除하고, D의 販賣地域을 制限하거나 販賣價格을 指定하여 強制하는 行爲를 即時 中止하도록 命令하였다.

(3) 協定·組合의 價格決定行爲

大韓藥師會B市支部는 44個醫藥品의 小賣價格을 共同으로 決定하고 傘下藥局들에게 그 價格대로 販賣하도록 強要하고, 醫藥品都賣商으로 하여금 이를 遵守하지 않는 藥局에 대한 醫藥品供給을 中斷하도록 要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B市支部會長을 告發함과 동시에 同支部에 대하여는 同價格決定行爲가 無效임을 所屬藥局들에게 周知시키도록 命令하였다.

4. 公正去來秩序의 確立을 위한 企業의 役割

公正去來制度는 經濟各部門의 競爭을 促進시키고 誠實하게 努力하는 企業이나 國民을 保護하여주는 經濟活動의 基準으로서, 이 基準의 範圍內에서 各界各層이 創意力을 發揮하여 經濟의 能率을 높이고 國際競爭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마련된 制度이다.

이 制度가 우리 經濟에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企業·消費者·政府의 새로운 機能分擔과 苦心努力이 必要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企業의 立場에서는 政府의 保護·支援을 要求하면서 競爭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選擇한 事業의 結果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責任을 진다는 姿勢로 原價를 줄이고 品質을 높여서 競爭力을 키워가겠다는 決意를 더욱 굳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公正去來制度의 施策方向에 맞추어 公正한 競爭을 生活化하고, 公正한 表示·廣告로 健全한 去來秩序를 確立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下都給去來에 있어서도 劣等한 中小企業에 대한 不公正한 行爲는 自律적으로 豫防·是正함으로써 企業間의 相互協力과 共存關係를 確立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